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53
----------	------

2025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5.26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5. 5.29

4. 상정일자 :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23)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5. 6.26)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¹⁾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 의안번호 제2843호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4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제안설명으로,
- 14개 변경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회수액을 2025회계연도 예치금으로 증감 반영하는 등 재무활동을 3,855억원 증액 하였으며
- 도시재생기금, 공공시설등설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정책사업비를 1,663억원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를 3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자 함

1) 일괄 제안설명에 따라 개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차이가 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이유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금액이 조정되어 2025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13,363백만원에서 20,916백만원으로 7,553백만원 증가

나.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여유자금예치」 금액도 6,753백만원에서 14,306백만원으로 7,553백만원 증가하였음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당초(A)	변경(B)	증감(B-A)
계	21,034	28,587	7,553
공공예금이자수입	557	557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034	7,034	-
기타회계전입금	0	0	-
기타그외수입	80	80	-
예치금 회수	13,363	20,916	7,553

<지출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당초(A)	변경(B)	증감(B-A)
계	21,034	28,587	7,553
비용자성 사업	8,631	8,631	-
융자성 사업	5,650	5,650	-
여유자금예치	6,753	14,306	7,553

3. 검토의견²⁾

- 서울특별시는 지난 '02년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을 운용하고 있음
-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가 75억 5,300만원 증가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여유자금예치**를 75억 5,3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³⁾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지출계획의 경우, 정책사업인 **일반예산(재무활동)**은 당초 지출계획(67억 5,300만원)보다 111.8%, 75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에 대한 수·지 균형을 일치시키고자 동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명시된 동 계정의 용도⁴⁾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

2) ■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pm 0.1\%$ 범위내) 차이 있음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주거지원계정)

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⁵⁾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지출 변경내용은 정책사업명이 아닌 “비용자성 사업, 융자성 사업, 예유자금예치”로 기재하여 제출한 바,

-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인 ①**일반예산(재무활동)**, ②**주거복지 수준 제고**로 기재하지 않고 정책사업의 범주를 기금운용계획중 자금운용계획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동 제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중 증감 및 증감률을 기재하지 않은 바, 이는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① (생략)

② 주거지원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저소득시민, 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택재개발 및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
3.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주거지원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5.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및 저소득층의 보증보험료 지원
6.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

5)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4. 7, p.283~284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가. 소위원회

○ 위원구성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11명)

－ 위 원 장 : 최민규(도시안전건설)

－ 부위원장 : 김경훈(교육), 정준호(교통)

－ 위 원 : 서호연(행정자치), 홍국표(기획경제)

이용균(환경수자원), 아이수루(문화체육관광)

도문열(보건복지), 봉양순(도시안전건설)

김종길(주택공간), 김원태(도시계획균형)

※ '25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

나.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5. 6.26(목) 12:00~13: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 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

VII. 부대의결 : 「해당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5. 6.26)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853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금액이 조정되어 2025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13,363백만원에서 20,916백만원으로 7,553백만원 증가
- 나.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여유자금예치」 금액도 6,753백만원에서 14,306백만원으로 7,553백만원 증가하였음
-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당초(A)	변경(B)	증감(B-A)
계	21,034	28,587	7,553
공공예금이자수입	557	557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034	7,034	-
기타회계전입금	0	0	-
기타그외수입	80	80	-
예치금 회수	13,363	20,916	7,553

<지출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당초(A)	변경(B)	증감(B-A)
계	21,034	28,587	7,553
비용자성 사업	8,631	8,631	-
융자성 사업	5,650	5,650	-
여유자금예치	6,753	14,306	7,55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주택실 주택정책과 김소영 (☎2133-7985)